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창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43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7.

발 의 자 : 한창민 · 김문수 · 정혜경
김재원 · 신장식 · 김종민
황운하 · 김용민 · 윤종오
손 솔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,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3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법원, 헌법재판소, 검찰청, 경찰청, 감사원, 국가정보원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정치적 중립이 특히 요구되는 기관의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의 정치적 활동을 위하여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강한 견제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, 대법원장 및 대법관,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, 감사원장, 국가정보원장, 검찰총장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, 경찰청장, 대장 이상 장성급 장교 등의 고위공직자는 선거일 전 5년까지 퇴직하여야 대통령선거·국회의원선거 및 시·도지사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3조제6항 신설 등).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2조제1항제5호 중 “제5항”을 “제5항·제6항”으로 한다.

제5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·국회의원선거 및 시·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일 전 5년까지 퇴직하여야 한다.

1. 대법원장 및 대법관
2.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
3. 감사원장
4. 국가정보원장
5. 검찰총장
6.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
7. 경찰청장
8. 대장 이상 장성급 장교

제60조의2제4항제2호 중 “제5항”을 “제5항·제6항”으로 한다.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2조(등록무효) ① 候補者登録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候補者의 登録은 無效로 한다.	제52조(등록무효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 된 것이 발견된 때	5. ----- -----제5항 · 제6항----- -----
6. ~ 11. (생 략)	6. ~ 11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53조(공무원 등의 입후보) ① ~ ⑤ (생 략)	제53조(공무원 등의 입후보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⑥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 · 국회의원선거 및 시 · 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일 전 5년까지 퇴직하여야 한다.
	1. <u>대법원장 및 대법관</u>
	2. <u>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</u>
	3. <u>감사원장</u>

제60조의2(예비후보자등록) ① ~ ③ (생략) ④ 예비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. 1. 1의2. (생략) 2.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3. 4. (생략) ⑤ ~ ⑫ (생략)	<u>4. 국가정보원장</u> <u>5. 검찰총장</u> <u>6.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</u> <u>7. 경찰청장</u> <u>8. 대장 이상 장성급 장교</u> 제60조의2(예비후보자등록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. 1. 1의2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<u>제5항 · 제6항</u>----- ----- ----- 3. 4. (현행과 같음) ⑤ ~ ⑫ (현행과 같음)
---	---